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4455

발의연월일: 2024. 9. 30.

발 의 자:서지영·서천호·김선교

이헌승 · 성일종 · 김소희

김대식 • 이인선 • 김도읍

조정훈 · 최은석 · 김승수

곽규택 · 송언석 의원

(14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문사회 분야 학술지원사업의 진흥 정책을 수립·추진하여 건전한 학술풍토를 조성하는 동시에 학술활동의 성과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반면에 현행법에서는 비영리법인, 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학술활동에 대하여 국가 재정을 지원하는 근거가 없음.

또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다르게 현행법에서는 연구부정행위 방지 및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실태조사, 학술지원사업의 성과 소유에 관한 사항도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음.

이에 학술단체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 지원과 연구윤리 실태조

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과 형평을 맞추는 한편, 학술 성과의 소유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 써 학술활동 기반을 강화하고 학문의 균형적인 발전을 유도하려는 것 임(안 제9조, 제15조의2 및 제16조의2 신설 등).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술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학술활동의 육성·지원) ① 교육부장관은 학술진흥을 위하여 국 내외 학술대회 개최, 학술지 발간 지원, 우수 학술지 발굴·육성 등 을 통하여 학술활동 관련 기관 및 단체의 활동을 육성하고 지원하 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학술활동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육성 ·지원을 위하여 학술 활동 관련 기관 및 단체의 학술활동과 관련 된 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

제15조제5항 중 "제2항에 따른 연구윤리지침의"를 "연구윤리지침의"로 한다.

제15조의2 및 제16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연구윤리 실태조사) ① 교육부장관은 제15조제2항에 따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연구윤리부정 행위의 발생 현황, 연구윤리지침의 운영 등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연구윤리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연구윤리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등

- 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대학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③ 교육부장관은 연구윤리 실태조사의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 ④ 그 밖에 연구윤리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결과 공개 등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의2(학술지원사업 성과의 소유·관리)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학술지원사업의 성과(이하 "학술성과"라 한다)는 대학등이 해당 연구자로부터 학술성과의 권리를 승계하여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술성과의 유형, 제6조제1항에 따른 학술지원 대상자 참여 유형 및 비중 등을 고려하여 학술성과를 연구자가소유하거나 여러 대학등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모 시(공모 외의 방법인 경우에는 해당절차가 시작되는 시점을 말한다) 학술성과의 소유가 국가에 있음을 또는 학술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가능성이 있음을 미리 공지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 1.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2.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학술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3. 해당 대학등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 4. 그 밖에 대학등이 학술성과를 소유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국가 소유 학술성과를 대학등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라 대학등이 소유한 학술성과의 관리 기준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학술성과의 소유에 관한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술성과 국가 소유의 공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모하거나 공모 외의 방법의 절차가 시작되는 첫 학술성과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아 제9조(학술단체활동의 육성) ① 제9조(학술활동의 육성ㆍ지원) ① 교육부장관은 학술대회 개최 교육부장관은 학술진흥을 위하 및 학술지 발간 지원, 우수 학 여 국내외 학술대회 개최, 학술 술지 발굴 • 육성을 위한 학술 지 발간 지원, 우수 학술지 발 지 평가 등을 통하여 학술단체 굴 • 육성 등을 통하여 학술활 활동을 촉진하고 장려하여야 동 관련 기관 및 단체의 활동 하다. 을 육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학술단체활동을 촉진하고 장려 학술활동 관련 기관 및 단체의 하기 위하여 학술단체의 활동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학술 활 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 · 관리 동 관련 기관 및 단체의 학술 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 • 할 수 있다. 관리할 수 있다. 제15조(연구윤리의 확보) ① ~ 제15조(연구윤리의 확보) ① ~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제2항에 따른 연구윤리지침 ⑤ 연구윤리지침의-----의 작성, 제3항에 따른 정부의 지원 및 제4항에 따른 대학등 의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5조의2(연구윤리 실태조사) ① 교육부장관은 제15조제2항에 따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시

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연구윤리부정행위의 발생 현황, 연구윤리지침의 운영 등에 대 한 실태조사(이하 "연구윤리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교육부장관은 연구윤리 실 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 청을 받은 대학등은 정당한 사 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③ 교육부장관은 연구윤리 실 태조사의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 ① 그 밖에 연구윤리 실태조사 의 방법 및 절차, 결과 공개 등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제16조의2(학술지원사업 성과의 소유・관리)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학술지원사업의 성과(이 하 "학술성과"라 한다)는 대학 등이 해당 연구자로부터 학술 성과의 권리를 승계하여 소유

<신 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술성 과의 유형, 제6조제1항에 따른 학술지원 대상자 참여 유형 및 비중 등을 고려하여 학술성과 를 연구자가 소유하거나 여러 대학등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모 시(공모 외의 방법인경우에는 해당 절차가 시작되는 시점을 말한다) 학술성과의소유가 국가에 있음을 또는 학술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가능성이 있음을 미리 공지하는경우에 한정하여 국가의 소유로할 수 있다.
- 1.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2.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학

 술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

 요한 경우
- 3. 해당 대학등이 국외에 소재 한 경우

- 4. 그 밖에 대학등이 학술성과 를 소유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
-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국가 소유 학술성과를 대학등 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라 대학등이 소유한 학술성과의 관리 기준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학술성과의 소유에 관한 세부기준은 대통령이로 정한다.